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제253회 이사회 회의록

구분	이사	감사
임원정수	9인	2인
재적임원	9인	2인
참석임원	6인	2인

1. 일시 : 2026년 4월 28일(화) 14:00~17:00 (회의 소집 통보일 : 2026년 4월 20일)

2. 장소 :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6) : 이계안, 김병환, 김우영, 김영미, 이자희, 선권수
 - 감사(2) : 정재흠, 안상우
- 불참 임원
 - 이사(3) : 박승현, 이대화, 김지훈
 - 감사(0) : 없음
- 배석 교직원
 - 법인(3) : 사무국장 박재순, 실장 김정웅, 과장 임지윤
 - 학교(7) : 총장 이동현, 부총장 장희선, 교무처장 김정원, 기획경영본부장 백상미, 총무처장 박종민, 기획예산실장 김보나, 재무회계팀장 곽기훈

4. 안건

- 제1호. 2025학년도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 제2호. 규정 제·개정(안) 심의
- 제3호. 감사 선임의 건
- 제4호. 기타 안건
 - 1) 간서명 이사 결정 및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5. 개회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를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6 피어선빌딩 별관 3층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류원렬 교목실장·신학과 교수(이하 '교목실장')의 사회와 사도신경 봉독으로 예배를 시작하여, 찬송가 198장을 다 같이 부르고, 교목실장이 대표 기도하다. 이어 다 같이 성경 말씀 잠언 7장 1~3절, 요한복음 1장 14절을 봉독하고 교목실장이 '말씀을 눈동자처럼'의 주제로 말씀을 전한 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

(교목실장 이석)

예배를 마친 후 김병환 이사가 이사 재적인원 9명 중 5명이 참석하여 개최 정족수를 충족

하고 감사 재적인원 2명이 모두 참석하여 성원이 되므로 개회를 선언하다.

6. 전차 회의록 보고

박재순 법인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 2026. 2. 20.(금)에 개최된 제252회 이사회 회의록과 주요 심의 사항을 상세히 보고하다. 김병환 이사가 참석 이사들을 대상으로 전체 회의 결과에 대한 이견 유무를 확인한 후 이견 없으므로 채택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김우영 이사의 동의와 김영미 이사의 재청으로 제252회 이사회 회의록 채택을 만장일치 가결하다.

7. 법인 및 위원회 현황 보고

사무국장이 법인 보고, 「정관」 관련, 위원회 현황 추가 및 변동 사항을 보고하다.

8. 심의 사항

김병환 이사가 이계안 이사장(이하 '이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이사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먼저 보고 사항

이사장 참석 후 진행하자고 제안하고, 참석한 전체 이사들에게 의견 유무를 물어 이견이 없으므로 이사회 이사의 동의와 선권수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이계안 이사장 참석)

(정회 16:00) 김병환 이사가 정회를 선포하다.

(속개 16:15) 김병환 이사가 속개를 선포하다.

[의안] 제1호. 2025학년도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결산(안) 심의

이사장이 의안 '제1호. 2025학년도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결산(안)'을 상정하고 감사·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제공된 자료를 토대로 법인회계(일반업무회계, 수익사업회계) 및 교비회계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법인회계 전반에 대한 재정분과위원회 개최 결과를 종합하여 순차적으로 요약 보고하다. 전반적으로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는 관련 법령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설명하고, 교비회계 주요 심의 내용 위주로 보고하겠다고 하다.

<input type="checkbox"/> 법인회계					
○ 2025회계연도 결산					
[일반업무회계]					
구분	2025회계연도		차액		비고
	결산	최종 추경예산	금액	비율(%)	
수입예산	824,105,282	841,437,929	-17,332,647	-2.06%	-
지출예산	824,105,282	841,437,929	-17,332,647	-2.06%	-
[수익사업회계]					
구분	2025회계연도		차액		비고
	결산	최종 추경예산	금액	비율(%)	
수입예산	3,680,908,760	3,765,461,573	-84,552,813	-2.25%	-
지출예산	3,680,908,760	3,765,461,573	-84,552,813	-2.25%	-
<input type="checkbox"/> 교비회계					
○ 2025회계연도 결산					
구분	2025회계연도		차액		비고
	결산	최종 추경예산	금액	비율(%)	
수입예산	46,389,105,016	47,624,908,000	-1,235,802,984	-2.59%	-
지출예산	46,389,105,016	47,624,908,000	-1,235,802,984	-2.59%	-

먼저 교비회계와 관련하여, 첫째,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인건비 구조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고, 결산서 기준 등록금 수입 대비 인건비 비중이 약 80%에 달하여 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에 구조적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대학 측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재정 계획을 검토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둘째, 기관장 업무추진비의 이사회 승인 기준을 초과한 집행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고 설명하다. 최종 추경예산안 대비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타 예산 전용을 통해 초과 집행된 내역이 확인되었으며,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최초 예산을 초과할 수 없고 증액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추경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고 하다. 또한 기관장 업무추진비 지출 시 해당 항목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로 업무추진비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집행·기록할 것을 당부하였다

고 설명하다. 셋째, 미사용 차기 이월 자금 최소화를 권고하였다고 설명하다. 결산서에 명시된 미사용 차기 이월 자금은 실질적인 여유 재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학 구성원들이 이를 잉여 이익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적립금 예산을 설정하고 결산 시 적립금을 적립하여 미사용 차기 이월 자금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설명하다. 또한 건축 적립 자금 등 필요한 재원을 별도의 적립금 계정으로 관리할 경우 미사용 이월 자금을 효과적으로 축소할 수 있다고 권고하였다고 설명하다. 넷째, 예비비 최소 설정을 권고하였고, 비등록금 회계 지출 예산에서 1억 5천만 원의 예비비가 편성되었으나 실제 사용되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며, 이 역시 구성원들에게 여유 재원으로 오해될 수 있으므로 본부 차원에서 보다 세밀한 예산 관리를 통해 예비비를 최소한으로 설정할 것과 등록금 회계 실질 손익보고서 작성을 권고하였다고 하다. 현행 자금계산서상 등록금 회계에 미사용 차기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은 일부 등록금 지출이 비등록금 회계로 처리된 결과이므로, 기획예산과 재무회계 부문에서 결산 완료 후 실질적인 등록금 회계 손익을 별도로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설명하다.

재정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평택대학교 재정 현황 보고와 관련하여 첫째, 수입·지출의 주요 변화 요인을 명확히 하고, 재정 자립 실행 계획 수립 및 주요 항목별 순수입액 파악을 위해 사업별 수입·지출을 구분하여 명시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둘째, 수입·지출 총계와 각 항목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가 일치하도록 정비할 것을 권고하고, 셋째, 연도별 미사용 전기 이월 자금과 미사용 차기 이월 자금을 반영하여 실제 예상되는 손익을 기재함으로써 실질적인 재정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설명하다. 이어 법인회계 결산에 대한 재정분과위원회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특이 사항 없이 적정히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재정분과위원회에 의한 내부감사 결과 보고를 마친다.

이사장이 재정분과위원회 보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 추가 설명을 요청하다.

인건비 구조 지속 검토와 관련하여 인건비는 임금과 인원의 곱으로 구성되며, 임금의 하방 경직성으로 인해 임금 조정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다. 또한 노동조합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인건비 절감이 쉽지 않고, 인원 조정 역시 용이하지 않은 사안이나, 향후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연 퇴직 인원 발생 시 이를 그대로 보충하지 않고 비례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인력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하다. 아울러 명예퇴직 외에도 희망퇴직 제도를 도입하여 인력 관리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인건비 비율이 약 80% 수준으로 매우 높은 상태라고 부연하다.

재학생 충원율 이탈 문제가 과거에 비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수도권 대학들이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지방대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다. 또한 재학생 충원율 문제는 교수의 학생지도, 시설, 학교 브랜드, 취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사안으로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다. 따라서 인건비 구조 문제 역시 단순한 재정 차원을 넘어 대학 전체 경영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으며, 관련 재정계획과 함께 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설명하다. 기관장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일부 초과 집행된 부분에 대해 이는 명절 기간 유관기관 및 취약계층 지원 기관에 쌀을 지원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다. 다만 해당 지출이 업무추진비로 처리된 것이 적정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사회공헌 성격의 비용으로 별도 회계처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다. 또한 업무추진비와 직원 복리후생비 간 전용 과정에서 총액 관리 및 회계처리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하다. 아울러 해당 성격의 지출은 기관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향후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다. 미사용 차기 이월금과 관련하여 적립금 방식 활용 권고에 대해 일반회계에서도 대손충당금, 감가상각충당금과 같은 적립 방식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겠

다고 하며, 등록금 회계 실질 손익보고서 작성 권고에 대해 필요성을 공감하며, 등록금 회계만을 기준으로 실제 손익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실시해 보겠다고 하다.

이사장이 참석한 전체 이사의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재정분과위원회의 보고 및 권고사항에 대해 내용을 기록하고 사후 관리할 것을 요청하며, 2025학년도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결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김병환 이사의 동의와 김우영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의결 사항

- 제1호. 2025학년도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결산(안) 승인 제청 : 원안 승인

[의안] 제2호. 규정 제개정(안) 심의

이사장이 의안 '제2호. 규정 제개정(안)'을 상정하고 본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본부장이 3건의 개정 중 '1.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안)의 핵심은 정원 변동 없이 학과 및 단과대학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 사유로 PTU기획위원회 논의에 따른 학과 명칭 변경과 AI중심대학 사업 추진을 위한 AI 관련 학과 명칭 체계 정비이며, 또한 패션디자인 및 브랜딩학과의 요청에 따라 학과 명칭을 '패션디자인학과'로 변경하여 전문성과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다.

총장이 '1.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 관련하여 패션디자인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변경은 AI중심대학 사업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한 것이며, AI중심대학 지원을 위해서는 학부 구조 중 100명 이상이 AI 관련 체계로 구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이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학과 명칭을 변경하게 되었고 향후 교육과정 개편을 고려한 조치이며, 정원 변동은 없다고 덧붙여 설명하다.

이사장이 '1. 평택대학교 학칙' 개정과 관련하여 참석한 전체 이사로 하여금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2. 대학원 학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부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본부장이 '2. 대학원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학과 및 전공 신설에 따른 별표 개정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 AI융합학과와 환경융합공학과 수소전공을 신설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다. 이는 평택 지역의 AI 스마트 제조 및 수소에너지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개정은 기존 대학원 정원 체계 내에서 학과 및 전공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하다.

'2. 대학원 학칙' 개정(안)과 관련하여 [별표1]에 기재된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의 'AI융합학과'가 신설된 것과 환경융합공학과에 '수소' 전공이 신설되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제공된 회의 자료상 세부 전공 체계가 변경되는 것인지 질의하며, 대학원에서 학과·전공 명칭을 신설하거나 정원 이동(기존 정원 재배분)하는 경우는 보고 사항, 입학정원 신설·증원의 경우는 교육부 승인(인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절차가 필요한 사항인지 질의하자, 총장이 대학원 학과 및 전공 신설은 이사회 승인 후 교육부에 보고하는 절차로 진행된다고 답하다.

해당 사안이 교육부 보고 사항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경우에 따라 교육부 승인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다. 학과 혹은 전공을 신설하는 경우 명칭만 이사회에 상정할 것이 아니라 학과를 신설하게 된 배경, 신설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재정 소요액, 해당 학과의 학생 모집 전망과 학생이 졸업 후 진로에 대해 함께 보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사항은 과거 보안학과 신설시에도 지적된

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번 이사회 자료는 이사회가 화요일에 개최됨에도 전주 금요일 오후에 받아 휴일로 인하여 문의할 방법이 없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사회 자료는 일주일 전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견과 같은 입장임을 밝히며, 해당 학과가 대학에 필요한 것이라면 학교의 발전 방향과의 적합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하며, 최소한 이사회에서는 그에 대한 방향성과 계획이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다.

이사장이 규정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첫째 향후 이사회 자료를 회의 일주일 전에 제출할 것과, 둘째 금일 상정된 학과·전공 신설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으로 처리하되, 해당 조건의 충족 여부를 이사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며, 관련 문안을 정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이사회에서는 이사장이 이를 확인한 후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줄 것을 요청하다.

이사장이 '3.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상정하고, 본부장이 '3.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상세히 설명하다.

지난 이사회에서도 동일하게 현실에 맞지 않는 직원 항목을 제외하고, 수당별 금액 또는 산정 기준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하며,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예산편성지침서를 하나로 정리해 줄 것을 요청하다.

이사장이 전체 설명과 논의 결과를 종합하고 참석한 전체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이견이 없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보완 사항을 이사회를 대신하여 이사장이 확인 후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3건의 규정 개정 중 '1. 평택대학교 학칙'은 원안 승인, '2. 대학원 학칙'은 조건부 승인, '3. 교직원 보수 규정'은 이사장 검토 후 책임하에 승인하는 것으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개진하자, 김병환 이사의 동의와 선권수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 가결하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 사항 • 제2호. 규정 제·개정(안) 승인 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택대학교 학칙」 : 원안 승인 2) 「대학원 학칙」 : 조건부 승인(보고 사항임을 전제로) 3) 「교직원 보수 규정」 : 보류(이사장 최종 확인 후 승인 진행 예정) ○ 확인 사항 • 「대학원 학칙」 개정(안) 교육부 확인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원 학과 신설시 교육부 승인 사항인지 보고 사항인지 재확인 필요 |
|---|

(대학 관계자 이석)

(안상우, 정재흠 감사 이석)

[의안] 제3호. 감사 선임의 건

이사장이 의안 '제3호.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며, 안상우 감사는 그간의 업무 수행을 통

74
환
70

08
8
70

해 학교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경영 방침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연임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사들에게 동의를 구한 후 안상우 감사를 연임하는 것으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김영미 이사의 동의와 이자희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가 결정하다.

○ 의결 사항

- 제3호. 감사 선임의 건 승인 제청 : 원안 승인
 - 안상우 감사 연임 (2026. 6. 28. ~ 2029. 6. 27.)

(안상우, 정재흠 감사 배석)

[의안] 제4호. 기타 안건

1) 간서명 이사 결정 및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이사장이 '제4호. 기타 안건'의 '1) 간서명 이사'를 이사장, 김병환 이사, 김우영 이사로, '2) 회의록 비공개 범위'는 관련 법령과 본 법인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르자는 의견을 개진하자, 김우영 이사의 동의와 선권수 이사의 재청으로 만장일치가 결정하다.

○ 의결 사항

- 제4호. 기타 안건
 - 1) 간서명 이사 결정 : 이사장, 김병환 이사, 김우영 이사
 - 2) 이사회 회의록 비공개 범위 결정
 - 회의록 비공개 범위 : 관련 법령 및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회 정보공개 지침에 따름
 - 이사회 보고사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에 근거하여 비공개

9. 폐회

이사회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김영미 이사의 동의와 김병환 이사의 재청으로 폐회하기로 만장일치가 결정하고 17시 00분 이사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26. 04. 28.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

이사장 이계안

이계안

이사 김병환

김병환

이사 김영미

김영미

이사 김우영

김우영

이사 김지훈

이사 박승현

이사 선권수

선권수

이사 이대화

이사 이자희

이자희

감사 정재흠

정재흠

감사 안상우

안상우

이
계
안

김
병
환

김
영
미

김
우
영

김
지
훈

박
승
현

선
권
수

이
대
화

이
자
희

정
재
흠

안
상
우